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-47호
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'11. 7월 중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의 우체국금융고객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8월 1일

우정사업본부장

### 집중호우 피해지역 우체국금융고객 특별지원 대책

1. 지원대상 :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우체국금융고객 중 수재민
2. 지원기간 : '11. 8. 1. ~ '12. 1. 31.(6개월)
3. 지원내용 : 우체국금융 취급수수료 면제
  - 온라인송금 수수료 면제(타행환 제외)
  - 통장재발행 수수료 면제
  - 자기앞수표발행 수수료 면제
4. 구비서류
  - 피해지역 우체국장 피해사실 확인서류 또는 구청, 읍·면·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